

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○ 조례에서 인용하는 「도서관법」 등 근거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목적 규정에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을 근거법령으로 추가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(안 제1조)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
○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의 띄어쓰기, ‘호’의 문장표현, 용어 등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와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 및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1조(목적)에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을 추가하여 근거를 구체화하였고,
- 2022년 12월 8일 전부개정 시행된 「도서관법」에 따라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필요적 조치로 판단되며,
-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4조, 안 제5조 및 안 제6조 등에서 문장표현, 용어 등 조문 정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.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인용조문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